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 안 번 호	2363
------------	------

2025. 02. 25.
주택공간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1. 제안경위

- 2025. 02. 03. 고광민 의원 발의 (2025. 02. 06. 회부)

2. 제안이유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4조제2항의 개정사항('24.3.19.)을 반영하여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함.
- '서울특별시 공간정보통합체계' 및 '도시기본공간정보'를 정의하여 현행 추진 업무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간정보협의회' 설치 및 기능을 추가하여 서울시 공간정보 구축·관리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에 상위법령의 기재를 명확히 함(안 제1조)
- 나. '관리기관'의 범위를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통합체계' 및 도시기본공간정보를 정의하여 조례 이해도를 높임(안 제2조)

- 다. 공간정보협의회 설치와 기능을 규정하여 서울시 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을 뒷받침함(안 제9조의2)
- 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4조제2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활용하려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4조)
- 마. 수수료 규정을 현행화 함 (별표 삭제)
- 바. 기타 자구 수정(안 제3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가. 개요

- 이 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 하면서 서울시가 현재 추진 중인 업무의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 〉

조항(안)	주요 개정사항
제1조(목적)	· 상위법령 기재를 명확히 함
제2조(정의)	· (제5호) 관리기관의 범위를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
	· (제10호) 서울특별시 공간정보통합체계 정의 신설
	· (제11호) 도시기본공간정보 정의 신설
제3조(적용범위)	· 자구 수정
제6조(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	· 자구 수정 (규칙 위임)
제8조(공간정보 표준 준수)	· 자구 수정
제9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 자구 수정

제9조2(공간정보협의회 설치 및 기능)	· 공간정보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신설 (서울시 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을 뒷받침)
제10조(중복투자방지)	· 자구 수정 (법령 일치)
제14조(공간정보 제공)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4조2항 개정사항 반영 수정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활용하려는 자의 범위 확대)
제15조(수수료)	· 자구 수정 (관련 법령 규정 준용)
별 표	· 삭제 (관련 법령 규정 준용)

- **안 제1조(목적)**, **안 제3조(적용범위)**, **안 제8조(공간정보 표준 준수)**, **안 제9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는 그 의미에는 변동이 없으나 조례를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
제3조(적용 범위) 공간정보의 생산·관리·활용과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 생산·관리·활용·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
제8조(공간정보 표준 준수)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관리, 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에 있어 법 제21조 및 제23조에서 정하는 기술기준 표준을 따라야 한다.	제8조(공간정보 표준 준수) ① ----- -- 공간정보체계를 구축·관리·활용하거나 공간정보를 유통할 때는 ----- ----- 기술기준과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수집·생산하는 공간정보를 법 제28조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체	제9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① ----- ----- 적합하도록 -----

계의 표준과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략)	----- -----. ② (현행과 같음)
--	--

나. 조문별 검토

(1)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제5호**는 “관리기관”의 범위를 현행 법령과 동일¹⁾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소속 행정기관 및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을 삭제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붙임1 참고, 이하 “공공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 이는 지난 ‘23년 8월 국가공간정보 수시 보안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붙임2)인 “관리기관의 범위가 법과 상충되는 사항”을 보완하여 법에서 정한 관리기관과 동일하게 규정한 것으로 파악됨.
- 다만, 현행 조례에서 관리기관이 서울시에게 제출해야하는 사항(사업별 시행계획, 공간정보 목록정보)²⁾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에 따른 공공기관은 국가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이므로 서울시의 관리·감독 권한 밖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안에서 이를 제외할 필요가 있겠음.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을 말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 : 전기통신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송유관 설치자관리자, 집단에너지 사업자

2)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5조(시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업별 시행계획을 매년 8월 31일 전까지 시 공간정보 업무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11조(공간정보 목록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영 제2조의 민간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목록정보를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뜻은 ----- -----.	제2조(정의) (개정안과 같음)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1. ~ 4. (개정안과 같음)
5.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민간기관을 말한다.	5. ----- ----- ----- ----- 자치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 ----- ----- ----- ----- -----.	5. ----- ----- ----- ----- 자치구, ----- ----- ----- ----- ----- -----.

- 안 제2조제10호(신설)는 “서울특별시 공간정보통합체계”에 대하여 서울시가 구축하고 있는 공간정보체계를 통합 또는 연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u><신 설></u>	제2조(정의) ----- 뜻은 -----. 10. “서울특별시 공간정보통합체계”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체계를 통합 또는 연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구축·운영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 “공간정보”³⁾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로, 지형·토지이용·자연환경·도로·건물 등의 정보가 이에 해당하고, 이 공간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 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연계(시스템)한 것이 “공간정보체계”⁴⁾임.

〈 공간정보 표준분류체계에 따른 데이터 목록 분류표〉

대분류(14종)	중분류(45종)
국토관리·지역개발	토지,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 경계, 건물·시설, 수자원, 부동산, 산업단지
도로·교통·물류	도로, 교통, 철도, 항공·공항, 해운·항만
환경·자연·기후	환경보호, 자연, 기후
농림·해양·수산	농업·농촌, 임업·산촌, 해양·수산·어촌
산업·중소기업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재난방재·공공안전	재난방재, 공공안전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문화재, 관광, 체육
교육	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
보건·의료	보건의료, 식품의약품안전
사회복지	사회복지, 노동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지방행정
과학기술·통신	과학기술, 정보통신
통일·외교·국방	통일, 외교, 국방
지도	영상, 고도, 기준점, 기타

- 서울시의 개별부서들은 소관 업무의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공간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며, 이 공간정보들을 “도시계획 포털”, “서울 공간정보

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맵”, “S-MAP” 등의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데, 서울시 전체 공간 정보시스템은 총 41개임(붙임3).

- 서울시 공간정보과에서는 2003년부터 개별 공간정보시스템에서 구축한 공간정보의 공동활용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공간정보의 중복구축을 방지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업무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통합공간정보시스템(SDW)”를 구축하여 운영(붙임3)하고 있음.
- 개정안에서는 이를 “서울특별시 공간정보통합체계”로 정의하고, 그 운영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의2에 따른 협의회에서 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참고로, 정부에서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⁵⁾를 운영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정의하여 운영 중인 통합공간정보시스템(SDW)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안 제2조제11호(신설)는 “도시기본공간정보”에 대하여 서울시 공간정보 중 중요한 요소인 주소·경계·기반시설 등을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선정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의2에 따른 협의회에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제2조(정의) ----- 뜻은 -----. 11. “도시기본공간정보”란 주소·경계·

5)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란 제19조제3항의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국가공간정보체계를 통합 또는 연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기반시설·지형지물 등 도시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공간정보로 시장이 정하는 주요 디지털 공간정보를 말한다.
--	--

- 서울시 공간정보과는 현재 ‘통합공간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약 850종의 공간정보를 개별부서로부터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이 중 ▲ 잦은 변화로 수시 갱신 및 유지관리 필요한 정보(건물, 노상주차장 등), ▲다수 시스템에 연계되는 정보(행정구역, 도로구간, 하천경계 등), ▲도시 개발 등을 위한 기본 규제 정보(용도지역, 용도구역 등) 등 15종의 공간정보를 선정하여 “도시기본공간정보”로 지칭⁶⁾하였음⁷⁾.
-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인한 수요((예) 이태원, 시청역 사고 등으로 인한 보도면 공간정보))를 고려하여 “도시기본공간정보”의 추가 선정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

(2) 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안 제6조)

- **안 제6조**는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의 업무의 지정을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임.
- 서울시는 현행 조례 제6조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디지털도시국 공간정보과’를 두고 있으며 관련 업무의 지정은 규칙 제5조⁸⁾에 따라 운영하

6) 서울시는 2018년 주요 공간정보에 대해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자체 연구와 자문, 부서간 회의를 통해 ▲잦은 변화로 수시 갱신 및 유지관리 필요(건물, 노상주차장, 중점경관관리구역 등), ▲서울시 공간정보 시스템에서 자주 활용(행정구역, 도로구간, 하천경계 등), ▲도시개발 등을 위한 기본 규제 정보(용도지역, 용도구역 등) 등 15종의 공간정보를 선정하였음.

7) 서울시 통합공간정보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_2024.07.공간정보담당관

8)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전담조직) 조례 제7조에 따른 전담조직은 별도로 신설하거나 해당 관리기관의 정보화 업무 총괄부서에 두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간정보체계 구축·관리의 총괄 및 조정

고 있어 업무 위임의 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 ----- ----- ----- 하고, 관련 업무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 다만, 규칙에서 정하는 전담조직(공간정보과)의 업무내역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상 공간정보과의 업무분장 사항(붙임1)의 상호 관계와 중복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음.
- 한편,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례 조문에 오기가 있어 디지털도시국에서는 이를 조속히 개정(“조례 제7조에 따른 전담조직” → “조례 제6조”)하여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겠음.

(3) 공간정보협의회 설치 및 기능(안 제9조의2)

- **안 제9조의2(신설)**는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등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임의규정)하고, 자문(임의규정)의 범위, 여비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면서 협의회⁹⁾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임.
-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적용 범위에 포함¹⁰⁾되므로, 설치 목적,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존속 기한

2. 공간정보체계 구축·관리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3. 공간정보체계 관련 전산장비(H/W, S/W, 네트워크, 응용프로그램 등) 운영

4. 공간정보체계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5. 공간정보 관련 업무의 발굴·개발

6.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책임자 지정

7. 공간정보의 보안 및 표준화 관련 업무

9)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1조(협력체계 구축)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를 구축·관리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관리기관 상호 간 또는 관리기관과 산업계 및 학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등¹¹⁾에 대하여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토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를 규칙으로 위임하였으나, 위원의 구성과 존속기한(5년 이내)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겠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신설>	제9조의2(공간정보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구축·관리·활용 등을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간정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의2(공간정보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개정안과 같음)
<신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도시기본공간정보 선정 및 갱신에 관한 사항 2. 서울특별시 공간정보통합체계 운영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전검토 사항	② (개정안과 같음)

10)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1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4. 그 밖에 공간정보의 구축·관리·활용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③ <u>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u>
<신 설>	③ <u>협의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	④ <u>협회의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u> ⑤ <u>(개정안 제3항과 같음)</u>
<신 설>	④ <u>그 밖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④ <u>(개정안 제4항과 같음)</u>

- **안 제9조의2제2항(신설)**은 협의회 자문 사항을 ‘도시기본공간정보 선정 및 갱신’(안 제2조제10호 참고), ‘공간정보통합체계 운영 및 관리 방안’(안 제2조제11호 참고),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전검토’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시는 정보화사업에 대해 예산타당성 심사¹²⁾를 추진하면서 그 내용

12)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예산타당성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서, 사업계획서, 산출내역서 등(이하 “심사요청자료”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예산타

중 조례 제10조제1항의 중복투자와 관련된 사항은 공간정보과에서 자체 심사하고 있으나, 최근 디지털 트윈과 AI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공간 정보가 현실과 가상공간을 연결하는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활용이 다양해짐에 따라 해당 업무가 날로 고도화되는 실정임.

- 따라서 이러한 상황들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고 심도있는 업무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됨.

(4) 중복투자 방지(안 제10조)

- 안 제10조제2항은 관리기관의 장이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할 때 “시장을 경유”한다는 문구를 삭제하여 법에서 정한 내용¹³⁾과 통일성을 기하되, 관리기관이 자치구와 공공기관일 경우 통보 전에 시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는 것임.
- 현행법에 따르면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이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되, 공공기관일 경우 통보 전에 주무기관의 장과

당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 정보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정보화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제2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요청자료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2. 다른 정보화사업과의 상호연계, 공동이용 및 중복성

3. 관련 법령과 규정 준수 여부

4. 관련업무의 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및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

5.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과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③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시 내·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1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9조(중복투자의 방지)

② 관리기관의 장이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는 통보 전에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미리 협의토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추가로 각 자치구와 공공기관이 새로운 공간정보를 구축할 경우 시장과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가 각 기관이 구축하는 새로운 공간정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기관 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이해됨.
- 다만, 자치구의 경우 매년 공간정보 시행계획에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서울시의 검토 받고 있어 개정안과 같이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법에 따른 공공기관은 정부가 설립 또는 출연한 기관으로 서울시의 통제권한을 벗어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서조항 중 공공기관을 삭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0조(중복투자 방지) ① (생략)	제10조(중복투자 방지) ① (현행과 같음)	제10조(중복투자 방지)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관리기관의 장이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을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 ----- ----- ----- 수립하고, ----- ----- ----- --. 다만, 관리기관이 자치구 또는 공공기관일 경우는 통보 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 ----- ----- ----- ----- 수립하여, ----- ----- ----- --. 다만, 관리기관이 자치구일 경우는 통보 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민간기	③ -----	③ -----

관의 장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2 9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 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의 구축과 관리에 관한 계 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외한다. 이하 ----- ----- ----- ----- ----- -----.	----- 제외한다. 이하 ----- -----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1. ~ 6. (개정안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5) 공간정보 제공(안 제14조)

○ **안 제14조**는 상위법 개정사항(‘24.3.19.)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한된 공
간정보 제공 범위를 기존 ‘공간정보사업자’와 ‘위치정보사업자’에서 법 제
34조제2항¹⁴⁾에 해당하는 민간 법인, 학술연구를 위한 자 등으로 확대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공간정보 제공) ① (생 략)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 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사 업자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가 공간정보사업,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 등 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 제34조제1항 본문	제14조(공간정보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 법 제3 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 ----- ----- ----- -----

1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4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간행하여 판매 또는 배포 하거나 해당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제35조의 보안관 리규정에 따라 공개가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유출이 금지된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3항, 제35조의2제 1항, 제35조의3, 제35조의4제1항 및 제35조의5제1항에서 같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학술연구, 공공복리 및 안전 등의 목적으로 공간정보를 활용하려는 자

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공간정보 보안분류 기준>

등 급	보안분류 기준
비공개	•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 •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공간정보
공개 제한	•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 • 기타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 예) 3차원 좌표가 포함된 90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 위성영상, 3차원공간정보, 등고선과 표고가 포함된 1:1,000 이상 지도 등
공개	• 비공개, 공개제한 대상 이 외의 공간정보

※ 자료: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6조

- 국회는 ‘24년 2월 공간정보를 주로 ‘생산’하는 공간정보사업자 및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활용’ 수요가 높은 소프트웨어사업자나 ▲스마트시티·자율주행 등 신산업 분야 사업자와 학술연구를 위한 자 등에 대해서도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하여 활용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가결했음¹⁵⁾.

< 공개제한 공간정보 수요현황 >

순위	사업자 종류	비율	순위	사업자 종류	비율
1	소프트웨어사업자	19.15%	6	GIS 업종	6.38%
2	공간정보사업자	17.02%	7	건설 교통 사업자	6.38%
3	스마트시티 및 자율주행 업종	10.64%	8	드론 사업자	4.26%
4	위치정보사업자	8.51%	9	철도 및 항만 사업자	4.26%
5	정보통신사업자	8.51%	10	기타 사업자	14.9%

※ 자료: 국토교통부 (’23.4월 자체 수요조사 결과)

15) [2123336]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1인)_2024.2.29. 국회 본회의 가결

- 서울시는 개정된 법 시행('24.3.19.)에 맞춰 '24년 4월부터 민간 법인과 학술연구를 위한 자 등에게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해왔지만(붙임5), 조례에는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었음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6) 수수료(안 제15조 및 별표)

- **안 제15조**는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에 대해 현행 조례 별표에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는 대신 법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수수료) ① 제14조에 따라 <u>공간정보를 제공 받으려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공간정보 수수료를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u> ②·③ (생략)	제15조(수수료) ① ----- <u>공간정보를 제공 받으려는 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 12]에 따른</u> ----- -----. ②·③ (현행과 같음)

- 시장은 현행 법령¹⁶⁾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여 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는 그동안 조례 별표에 수수료를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금액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받아왔으나(붙임6), 지난 2022년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수수료가 인하되었음에도 조례는 이를 미반영하고 있어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겠음.

16)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4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④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복제 또는 출력한 자료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3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⑤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해야 하며,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한다)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 또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법 시행규칙이 3차례¹⁷⁾ 개정되었는데, 이에 맞춰 매년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수수료에 대하여 별표를 삭제하고 법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하는 것임.

다. 종합의견

- 이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서울시가 추진 중인 업무의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디지털도시국은 상위법 개정사항이 적기에 조례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법령이나 타 조례에 따라 규칙으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디지털도시국은 공간정보통합체계의 운영에 있어 단순 공간정보의 수집·저장·가공·분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활용성과 목적성에 대한 계획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자료의 정확성과 갱신 시기 등의 관리를 통해 신뢰성 있는 공간정보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음.

의안심사지원팀장	강 대 만	02-2180-8204
입 법 조 사 관	김태훈	02-2180-8203

1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19.2.25., 2021.2.19., 2021.8.27., 2022.12.13.>

[붙임1] 관계법령 (p.19)

[붙임2] 서울시 국가공간정보 수시 보안점검 결과(p.25)

[붙임3] 서울시 통합공간정보시스템 개요(p.27)

[붙임4] 기본공간정보과 도시기본공간정보 비교(p.30)

[붙임5] 서울시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현황(p.33)

[붙임6] 최근 3년간 서울시 공간정보 수수료 납부 현황(p.36)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4. 6. 3.>

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을 말한다.
5. “국가공간정보체계”란 관리기관이 구축및관리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6.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란 제19조제3항의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국가공간정보체계를 통합 또는 연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7. “공간객체등록번호”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적 또는 인공적 객체에 부여하는 공간정보의 유일식별번호를 말한다.

제19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형·해안선·행정경계·도로 또는 철도의 경계·하천경계·지적, 건물 등 인공구조물의 공간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간정보를 기본공간정보로 선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고시된 기본공간정보(이하 “기본공간정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이 제2항에 따라 구축·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이하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통합하여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기본공간정보 선정의 기준 및 절차,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리,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통합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6조로 이동 <2014. 6. 3.>]

제29조(중복투자의 방지) ① 관리기관의 장은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구축된 공간정보체계와 중복투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구축하고자 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해당 기관 또는 다른 관리기관에 이미 구축되었는지 여부

2. 해당 기관 또는 다른 관리기관에 이미 구축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 가능 여부

② 관리기관의 장이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는 통보 전에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중복투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⑤ 제3항에 따른 중복투자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간행하여 판매 또는 배포하거나 해당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제35조의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공개가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유출이 금지된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6. 3., 2021. 3. 16.>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3항, 제35조의2제1항, 제35조의3, 제35조의4제1항 및 제35조의5제1항에서 같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이스 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 3. 16., 2024. 3. 19.>

1.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학술연구, 공공복리 및 안전 등의 목적으로 공간정보를 활용하려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35조에 따른 관리기관의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16.>

④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복제 또는 출력한 자료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 3. 16.>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41조로 이동 <2014. 6. 3.>]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3.10., 2022.10.17., 2024.7.15.>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시 소속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청년”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 설치가 필요한 조례를 제·개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은 위원회 설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별지 서식의 위원회 신설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2024.7.15.>

제1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7.15.>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4(디지털도시국) ① 디지털도시국에 디지털정책과·데이터전략과·정보시스템과·정보보안과·정보통신과·공간정보과를 둔다.

② ~ ⑧ (생략)

⑨ 공간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간정보정책 수립·조정
2.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추진
3.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 및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4. 공간정보 표준화 및 품질관리
5. 공간정보 통합·유통·개방 및 이용 활성화
6. 공간정보 교육·홍보 및 정책발굴
7. 3차원 기반 Virtual Seoul 구축·운영
8. 주소정보 정책 수립 및 조정·운영
9. 수치지형도 제작, 갱신 및 유지관리
10. 지도정보 플랫폼 및 스마트서울맵 구축·운영
11.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12. 실내 공간정보 구축·활용
13. 항공사진의 촬영·관리·활용
14. 무인 비행장치(드론) 및 위성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
15. 서울스마트불편신고 구축·운영
16. 공간정보 보안정책 관리·운영

□ 점검개요

- (기간/대상) '23.8.30.(수)~31.(목) / 서울시 공간정보담당관 및 서울디지털재단
※ 점검반 : 국가정보원(2명)·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1명) 합동 점검
- (점검내용) 서울시 출자기관인 서울디지털재단을 통한 공개제한 공간 정보의 대국민 공개 적정성 여부

서울디지털재단 고정밀 공간정보 공개 현황

- ▶ (주요내용) 서울시와 서울디지털재단은 고정밀 공간정보를 활용해 메타버스,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신기술을 자유롭게 실험·실증할 수 있는 오프라인 디지털 트윈랩 공간을 서울디지털재단에 마련하여 학생·전문연구자·민간기업에 공개('23.7.10, 보도자료 배포)
- ▶ (활용정보) 서울시의 공간정보* 총 370종 활용 가능(단, 외부로 자료 유출은 불가)
* 공개 203종, 공개제한 168종(3D 건물 및 드론 정사영상 등 포함)
- ▶ (이용방법) 서울스마트시티누리집에 사전예약 후 방문→신분증 확인 등 보안절차를 거쳐 오프라인 사무실에 입장→공간정보 활용
- ▶ (이용실적) 개청 후 총 1명 이용

□ 점검내용 및 결과

< 법률적 적법성 >

- 서울디지털재단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관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서울디지털재단은 서울시 조례에 의한 출자기관으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기관에 미해당
*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기관 중 전기통신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송유관 설치자·관리자, 집단에너지 사업자
- 서울디지털재단이 서울시(관리기관)가 생산·관리하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3자에게 열람하게 하는 업무가 가능한지 여부
-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37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서 제공받은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제3자에게 열람·복제·유출이 불가

< 시스템 보안 적정성 >

- 오프라인 디지털트윈랩(활용공간)에 대한 보안성 검토 여부
 - (자료관리) 보인인증(laaS SCAP)을 획득한 KT G-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하여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보관
 - (외부 접속 차단) 오피스스키퍼 프로그램을 사용한 정보의 외부 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지정PC 외 외부 IP 접속 차단, 웹브라우저·메일 등 사용 차단 등 조치, 스티커를 이용한 USB 사용 차단
 - (공간관리) CCTV를 통해 출입자 및 사용자 현황 관리 등 조치
- ⇒ 웹브라우저·메일 기능 등 윈도우 환경에서의 외부 접속은 차단되어 있으나, 명령프롬프트를 이용한 외부 접속은 가능(보안성 취약)
- ⇒ USB도 종이테이프를 접속 금지 안내문만 부착하여 언제든지 사용 가능
- ⇒ 활용공간은 카드키로 출입이 가능하여 직원 누구나 출입 및 PC 사용 가능

□ 조치사항

- (서울시) ❶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관리기관)* 개정 추진 ❷ 서울디지털재단에 제공한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회수 또는 파기 조치 ❸ 직속기관 및 사업소, 시 투자·출연기관, 자치구를 대상으로 정기적 점검 및 감사 실시

* 상위법령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상충

- (서울디지털재단) ❶ 명령프롬프트를 이용한 외부 접속 차단 등 시스템 보안 강화 ❷ 활용공간에 대한 통제구역 지정 등 보안 조치 ❸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가상데이터화 등 보안조치 후 대국민 공개 추진 ❹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신청(과기부)

□ 향후일정

- 조치사항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제출(~9.27, 서울시→행안부)
- 보안대책 적정성 검토 및 결과 통보(~10.20, 행안부→국정원)

우리시 개별 공간정보시스템에서 구축한 공간정보의 공동활용 및 체계적 관리와 지도기반의 행정정보 제공을 통한 효과적인 업무 지원

* SDW: 공간정보(Spatial Data)와 창고(Warehouse)의 합성어, 공간정보 통합저장소

☐ 추진방향

- 개별부서 **공간정보의 중복구축 방지**로 업무효율성 증대 및 예산절감
- 활용 중심의 공간정보 수집·공유·제공 등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 쉽고 편리한 **지도 기반에 주요 행정정보를 융합 제공**함으로써 용이한 의사결정 지원

☐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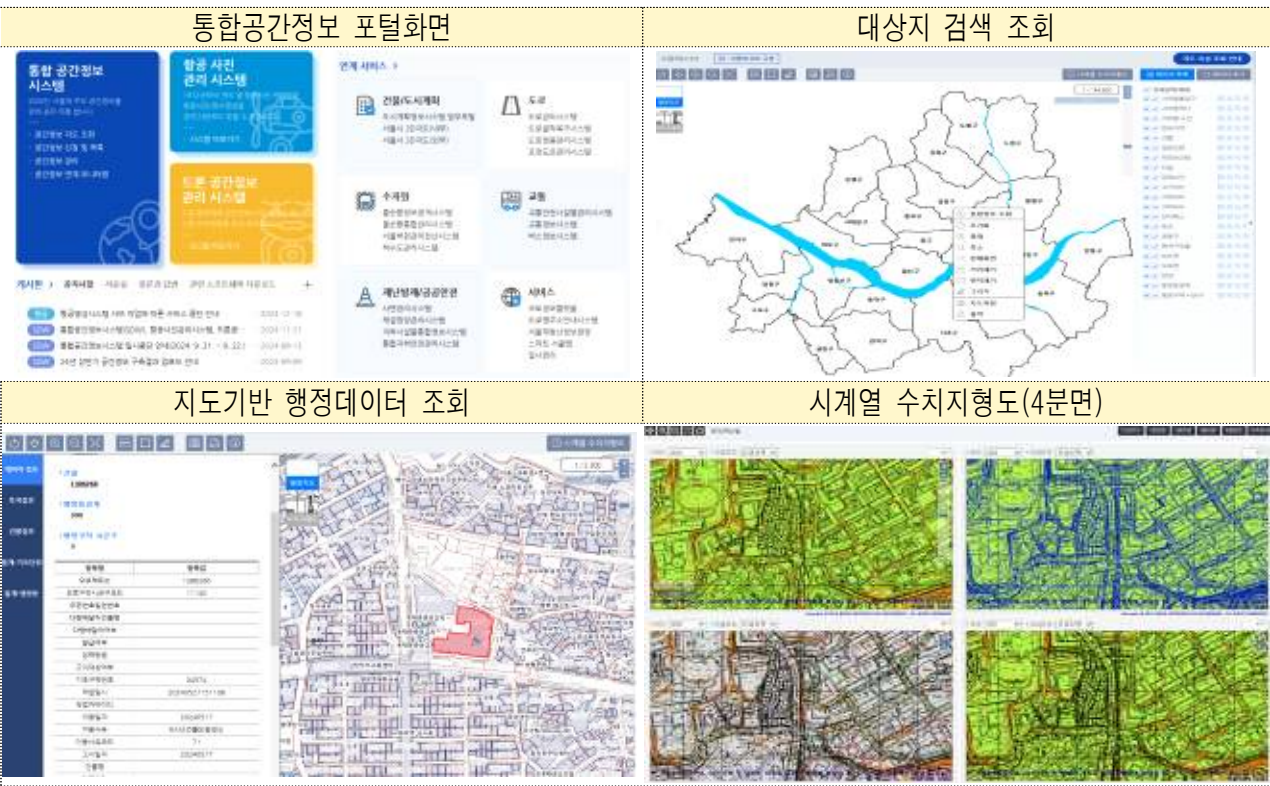
- '03~'07년 :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SDW) 구축** 및 유지관리
- '08~'18년 : 통합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능개선
- '20년 : 공간정보 연계 현행화 및 시민 개방 확대(열린데이터광장)
- '21년 : 통합공간정보시스템 기반 항공·드론영상 통합관리 체계 구축
- '24년 : **노후 시스템 재개발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 추진**

☐ SDW 역할 및 주요기능

- **서울시 공간정보 허브 및 포털로 전 직원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범용시스템**
- 개별 공간정보시스템(41종) 연계 및 공간정보 수집·검색·제공
- 우리시 공간정보목록 및 메타데이터 관리로 공유 및 활용 지원
- 1/1,000 수치지형도, 시계열, 대용량 행정자료 공간정보 구축 및 서비스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및 통계(인구·과세대장·사업체) 지도기반 조회
- 항공사진(업무용)시스템 및 드론공간정보시스템 관리 기반 제공

□ 2024년 추진현황

○ 사용대상 : 서울시 전 직원(시·자치구) / 서비스 화면



○ 데이터 연계 및 공간정보 현황

연계시스템 수		공간정보 현황(레이어)		공간정보 목록현황	수치지형도 (시계열)
공간정보	행정정보	수 집	제 공		
41종	4종	850개	1,013개	4,179개	1996~2023년

○ 활용현황 : 월 평균 이용자 25,476명

구 분	합계	2024.11월	2023년	2022년
계	4,159,928	1,201,470	1,620,958	1,337,500
시 스템 접 속	891,679	289,216	319,777	282,686
공 간 데 이 터 검 색	188,438	133,488	27,914	27,036
행 정 데 이 터 검 색	3,079,811	778,766	1,273,267	1,027,778

○ 공간정보 제공실적

구 분	합계	2024.11월	2023년	2022년
신 청 건 수	338	94	136	108
데 이 터 제 공 수	32,338	8,747	12,124	11,467

□ 통합공간정보시스템과 개별 시스템 간 연계현황(41종)

연번	시 스템 명	운 영 부 서	연 계 방 식	수집레이어 30개시스템	제공레이어 16개시스템	연계 주기
합 계				850	1013	
1	서울시3D지도(S-Map)	공간정보과	범용제공		44	
2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ETT(수집)&범용(제공)	75	43	주
3	스마트서울맵		ETT	115	44	주
4	수치지형도(대용량행정포함)		일괄수집	114		연1회
5	드론공간정보		시스템공동활용			
6	항공사진업무시스템		시스템공동활용			
7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		ETT	21		일/월
8	도로굴착복구시스템	도로관리과	ETT	5		일/연1회
9	도로관리시스템		ETT(수집)&범용(제공)	31	28	월
10	제설현장관리시스템		ETT	10		월
11	포장도로관리시스템		ETT	9		일/연1회
12	도로점용관리시스템	보행환경개선과	ETT	8		일
13	보도포장관리시스템		ETT	3		월
14	CCTV현황관리시스템	정보통신과	ETT	2		월
15	주차관리·주차안내시스템	주차계획과	ETT	8		월
16	물순환통합관리시스템	수변감성도시과	ETT	13		월
17	물관리열린공개시스템		ETT	57		변동시
18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물재생계획과	ETT(수집)&범용(제공)	12	26	격주
19	하천관리시스템	치수안전과	ETT	16		월
20	수방관리시스템		ETT	10		일
21	상수도GIS	서울아리수본부	ETT(수집)&범용(제공)	58	29	일/월
22	수질자동관측시스템	서울아리수본부 (급수운영)	범용제공		2	월
23	교통정책지원시스템	미래첨단교통과	ETT	3		일
24	버스정보시스템		ETT	2		일
25	교통안전시설물관리시스템	교통운영과	ETT	18		일
26	중차량운행허가시스템	교량안전과	ETT	4		연1회
27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토지관리과	ETT	59		일/주
28	부동산정보광장		ETT(수집)&범용(제공)	6	13	일/연1회
29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재산관리과	ETT	1		월
30	부동산가격공시지원시스템	세제과	범용제공		10	월
31	재난정보관리시스템 (구 통합재난관리시스템)	재난안전예방과	ETT	31		월
32	통합사면관리시스템	산지방재과	ETT	15		격주
33	119종합전산정보시스템	서울종합방재센터	ETT(수집)&범용(제공)	26	9	월
34	서울스마트뷰	데이터전략과	일괄제공		187	신청시
35	빅데이터플랫폼		일괄제공		144	신청시
36	열린데이터광장		범용제공		325	월
37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도시계획상임기획과	ETT(수집)&범용(제공)	117	59	일/연1회
38	햇빛지도대시민서비스	녹색에너지과	ETT	1		일/연1회
39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	토지관리과	범용제공		42	월
40	환지관리시스템	도시정비과	범용제공		1	월
41	지적측량포털시스템	토지관리과	범용제공		7	월

□ **현황**

○ **기본공간정보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9조**

- 제2차 국가공간정보 기본계획('00~'05)에서 기본공간정보 계획·구축
 - ('00) 8개 : 교통(도로·철도), 수자원(하천), 행정경계, 지적, 측량기준점, 영상, 문화재
- 2011년 기본공간정보 선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60, 2011.10.12)
- 2017년 기본공간정보 체계 개선방안 수립(국토교통부 2017.9)
 - 기본공간정보의 데이터모델 및 품질기준 마련, 관리 및 유통체계 개선 등 개편 추진 및 항목조정추진
- 2018년 기본공간정보 선정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3호, 2018.02.12))

○ **도시기본공간정보**

- 2018.01.24. 통합공간정보시스템 사업계획 수립
 - 도시기본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 ▶ 1/1,000 수치지형도, 지적도, 지하시설물 등 사용빈도, 중요도
 - ▶ 최신성 및 정확도 개선을 위한 품질관리 방안 연구
- 2018.10.17. 도시기본공간정보 선정 자문
 - 자문위원 : 이지영 교수(서울시립대)
 - 주요내용
 - 1) 도시 기본 요소를 고려하여 서울시를 대표 할 수 있는 공간정보 선정
 - 2) 선정기준
 - 가. 행정을 위해 갱신 및 유지관리가 필요한 공간정보를 선정
 - 나. 공간객체와 속성에 대한 활용도 고려
 - 다. 공간정보의 기준이 될수 있는 필수 항목으로 선정
 - * 갱신주기 및 활용도를 고려하여 수치지형도는 도시기본공간정보로 선정하기 어려우며 배경지도로 사용할 경우 항공사진이 적합함
- 2018.10.19. 도시기본공간정보 지정을 위한 부서회의
 - 참여부서 : 자치행정과, 주차계획과, 도로관리과, 도시계획과, 토지관리과
- 2018.10.29. 도시기본공간정보 지정을 위한 부서회의 결과보고
 - 도시기본공간정보(15종) 지정

□ 개요

기본공간정보	도시기본공간정보 재선정
공간정보를 통합·활용하기 위한 기본 틀이 되는 정보로써 GIS를 구축·활용하는데 가장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국가기초정보 - 다른 공간정보를 제작·중첩 활용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준정보로써 별도 편집이나 추가 작업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	스마트시티 등 공간정보를 구축·활용하는데 기본으로 필요로 하는 공간정보로써 범용성과 활용성, 최신성, 기반성을 고려하여 재선정 하여야 함 < ISP 결과서 - p. 388>

□ 기본공간정보 구축 목적

기본공간정보	도시기본공간정보
기관별로 기초정보를 제작하여야 하는 중복구축을 방지하고 국가차원의 일관성 있는 GIS 구축 - 용도지역지구 등 주제 공간정보, 민간의 내비게이션 등 제작시 위치 기준, 각종 관련 속성정보를 쉽게 추가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	< ISP 결과서 - p. 387> · 행정혁신을 위한 데이터의 최신성에 대한 사용자의 높은 요구 · 데이터 갱신사업과 연계한 데이터 통합 관리체계구축 < 기본공간정보 회의결과 > - 다수의 공간정보 시스템에서 연계 중인 공간정보로 선정 - 도시개발 및 재생을 위한 기본규제 정보 선정

□ 기본공간정보 항목 : 도시기본공간정보(15종), 기본공간정보(23종)

도시기본공간정보				기본공간정보(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3호)				
구분	공간정보(한글명)	공간정보(영문명)	원본 보유시스템	분류			구축기관	관련시스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건물	건물	TL_SPBD_BULD	도로명주소안내	경계	행정구역	법정경계 행정경계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한국토지정보 국가주소정보 센서스공간통계
기본도	행정구역시군구	TL_SCCO_SIG	도로명주소안내		통계구		통계청	
기본도	행정구역읍면동	TL_SCCO_EMD	도로명주소안내	교통	도로	도로경계선 도로경계면 도로노드 도로링크 인도	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도관리
기본도	연속지적	LP_PA_CBND	부동산종합공부			점형도로시설 선형도로시설 면형도로시설		
기본도	행정동경계	G001_4	수치지형도(세계)		도로시설	철도경계면 철도노드 철도링크		
지형	하천경계	RIVERBOUND_A	하천관리시스템		철도	점형철도시설 선형철도시설 면형철도시설		
도로	도로구간	TL_SPRD_MANAGE	도로명주소안내		철도시설			
도로	도로면	RDL_RDAR_AS	도로관리시스템		해양	해양경계 해저지형	국립해양조사원	종합해양정보
도로	도로 사면 선	TB_SLP_RD_LS	사면관리시스템			해안선 수심		
도로	노상주차장	PK2_UCHA_NS	주차관리시스템		수문	하천경계 실폭하천 하천중심선	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도관리
용도지역	주거지역	UPIS_SHP_UQA100	도시계획정보관리			수로시설 수로시설		
용도지역	상업지역	UPIS_SHP_UQA200	도시계획정보관리	지적	연속지적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정보
용도지역	공업지역	UPIS_SHP_UQA300	도시계획정보관리	주소	도로명주소		행정자치부	국가주소정보
용도지역	녹지지역	UPIS_SHP_UQA400	도시계획정보관리	지형	수치지도형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영상정보 국가지명관리
용도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	EMPHS_SCENE_ZONE	도시계획정보관리	지명	육상지명 해양지명		국립해양조사원	종합해양정보
				위치기준	측량기준점			국가기준점발급
				시설	건물		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도관리
				물	건물중심점 건물시설			
				영상	정사영상			공간영상정보
				시설	입체모형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붙임5

서울시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현황

① 민간 대상

– 제공근거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4조 제2항 1호(민간 제공 대상 확대)

※ 관련 법 개정('24.3.19.): (기존) 위치정보, 공간정보 사업자 ⇒

(변경)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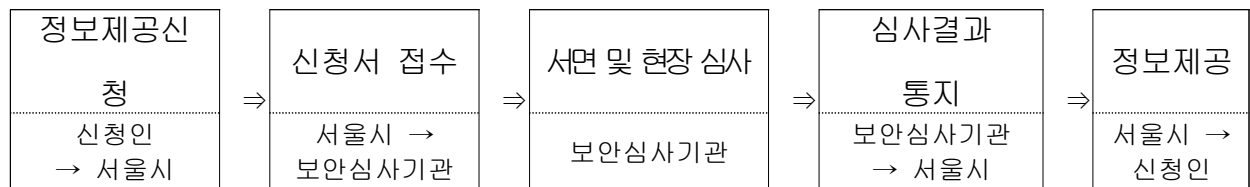
– 제공목적 : 디지털 신사업 육성을 위해 3D, 고정밀지도 등을 제공

– 제공조건 : 전문기관의 보안심사* 통과(시행령 제23조 2항)

▶ 보안심사 기준: 관리체계, 인적보안, 접근통제, 물리적 보안대책 등 8개 분야

*서울시는 법령이 정한 전문기관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약('23.3월)하여 요청기관의 보안심사를 의뢰하고 심사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기관에만 제공

– 보안심사 절차



– 민간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현황 : 제공 20건, 심사중 2건 (2023년 ~)

연번	신청일자	신청기업	심사기관	만료일	심사신청목적 (신청데이터)
1	2023.2.9.	(주)코드스토리	공간정보 산업진흥원	2025.4.23.	디지털트윈사업 활용 (3D 건물)
2	2023.3.9.	(주)모빌테크	공간정보 산업진흥원	2025.6.29.	3차원 공간정보 서비스에 활 용(3D건물, DEM, DSM 등)
3	2023.4.17.	(주)울포랜드	한국국토 정보공사	2025.6.12.	3차원 공간정보 서비스 활용모델 개발(3D건물, DEM, DSM 등)
4	2023.5.15.	(주)명지정보기술	한국국토 정보공사	2025.7.17.	3차원 국토공간정보 및 공공시설 과 실내공간정보 구축 (3D건물, DEM, DSM 등)
5	2023.5.25.	뱀부스(주)	공간정보 산업진흥원	2025.7.25.	3차원 정밀도로지도 서비스에 활용 (3D건물, DEM, DSM 등)
6	2023.6.1.	(주)카카오	한국국토 정보공사	2025.6.28.	카카오맵 및 고정밀지도 구축 테스트 (3D건물, DEM, DSM 등)
7	2023.7.31.	(주)삼우이 머션	공간정보 산업진흥원	2025.12.10.	AI기반 자율개발훈련용 모의비행훈련체계 소프트웨어에 이용 (3D건물)

연번	신청일자	신청기업	심사기관	만료일	심사신청목적 (신청데이터)
8	2023.11.6.	메이사플래닛(주)	한국국토 정보공사	2026.2.1.	공간정보검색활용 플랫폼에서 분석서비스에 활용 (3D건물, 정사영상)
9	2023.11.22.	(주)소다시스템	한국국토 정보공사	2025.12.13.	2,3차원 공간정보 서비스에 활용 (3D건물, DSM, 정사영상)
10	2024.01.25.	현대오토에버(주)	한국국토 정보공사	2026.3.12.	UAM내비게이션 지도 개발에 활용
11	2024.7.3.	스페이스워크(주)	공간정보 산업진흥원	2025.9.6	랜드북 및 엘비디벨로퍼 서비스 건축 규모검토 분석(공간정보 명칭 수치표고모형, 3차원시설물)
12	2024.07.18.	(주)그룹레이어스	공간정보 산업진흥원	2026.7.29	지형 및 건물 3D 공간정보 서비스를 활용한 도시경관 모델링(정사영상, 3D시설물)
13	2024.7.29.	(주)화이트스캔	한국국토 정보공사	2025.8.25.	서울 스마트라이프 워크 XR 컨 텐츠 서비스 개발(등고선, 표고 점, 정사영상, 3D건물, DEM, 3 차원점군모델)
14	2024.8.30.	(주)카카오	한국국토 정보공사	2025.6.28.	카카오맵 서비스 활용 및 테스 트(실감정사영상, DEM, 건축물 입체모형 OBJ와 SHP, 3차원 점 군모델)
15	2024.9.6.	(주)올포랜드	한국국토 정보공사	2025.9.24.	항공·드론 촬영 및 Virtual Seoul 3D공간정보 고도화 용역 사업DB제작 기초자료(23년 서 울시 1:1000 수치지형도)
16	2024.5.29.	씨엠월드	한국국토 정보공사	수령대기	3차원 공간정보 가시화 및 분석서비스를 제공할수있는 서비스데이터 제작에 활용
17	2024.8.23.	라미랩	공간정보 산업진흥원	수령대기	침수예측 기반 재난 대응 솔루션 연구개발
18	2024.9.9	KCEI	한국국토 정보공사	2026.10.29.	장비 시뮬레이션을 위한 범용 3D공간정보 서비스 (건물시설물3D모델, DEM, 정사영상)
19	2024.10.11	연우테크놀러지	공간정보 산업진흥원	2026.10.24.	서울형 건설스마트맵 프로토타입 서비스 개발 (등고선, 표고점, 정사영상 3d모델 DEM 등)
20	2024.10.15	모라이	공간정보 산업진흥원	수령대기	자율주행 시뮬레이션용 디지털 트윈 맵 제작
21	2024.12.20.	(주)케이티	한국국토 정보공사	심사중	저고도 UAM 교통관리용 지도 제작 (실감정사영상, DEM, 3차원 점군모델)

연번	신청일자	신청기업	심사기관	만료일	심사신청목적 (신청데이터)
22	2024.12.24.	주식회사 앤뉴	한국국토 정보공사	심사중	부동산 홍보 3D 플랫폼 제작 (실감정사영상, DEM, 3D건물)

②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학술연구 목적 신청자

- 제공근거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4조 제2항 2호 (학술연구 목적 제공 명시)
서울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10조, 제11조
- 제공현황 : 37,333개(779건) ('24년 12,439개 '23년 12,881개, '22년 12,013개)
〈 국가 및 공공기관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현황 〉

구분	계	2024년	2023년	2022년
합계	37,333 (779)	12,439 (269)	12,881 (296)	12,013 (214)
수치지형도	35,234 (350)	11,643 (103)	12,124 (139)	11,467 (108)
지하시설물	2,004 (334)	756 (126)	720 (120)	528 (88)
3D공간정보	95 (95)	40 (40)	37 (37)	18 (18)

※ 수치지형도 및 지하시설물 : 제공하는 도엽수 혹은 레이어 수

3D공간정보: 제공 건수 (고용량 개별 객체 데이터가 압축된 형태로 개별 건수 산정 불가)

[최근3년 항공사진 민원 제공 건수 및 수수료 현황]

구 분	민원 제공 건수	수수료(원)
2024년	374	748,000
2023년	558	1,116,000
2022년	662	1,324,000